

- 나)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. 이 경우 복직발령일 전일까지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
- 다)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. 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7호)

7) 기타

- 가)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
 - (1) 경력평정: 산입
 - (2) ~~호봉승급~~: 호봉승급기간에 포함
- 나) 결원보충: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
- 다) 보수
 - (1) 봉급: 지급안함. 단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휴직할 경우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2년 미만 근무한 자는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
 - (2) 수당: 지급안함. 단,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

다. 생사불명

- 1) 근거: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3호
- 2) 휴직사유: 천재지변이나 전시·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
- 3) 휴직의 요건
 - 가) 휴직 대상: 남·여 교육공무원
 - 나) 생사 또는 소재 불명의 의미: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여부와 소재를 모두 알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 하여야 함
- 4) 휴직기간 및 횟수
 - 가) 법정휴직기간: 3개월 이내
 - 나) 휴직발령기준일: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
 - 다) 휴직의 횟수: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
- 5) 휴직신청서류
 - 가) 휴직신청서: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
 - 나) 휴직사유 입증서류: 당해 교육공무원이 생사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6) 복직절차
 - 가) 휴직처리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자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
 - 나)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